

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4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9. 11. 5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1. 5
- 라. 상정일자 : 2009. 12. 18 (제178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
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원활하게 운영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.(안 제2조제3호)
- 총괄조정관의 직급을 기획관리실장으로, 통제관의 직급을 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으로, 담당관의 직급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상향조정함.(안 제1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)
-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, 제명 띄어쓰기 및 약칭에 관한 사항 개정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동 일부개정조례안중

- 안 제2조 제3호의 단서를 신설하여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제5호 나목의 사전 대비체제 개정은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」 제2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단계별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
- 안 19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, 통제관, 담당관의 직급 사항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 제3항에 의거 “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황 발생시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에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, 법령용어 정비 순화, 약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윤지상, 김소림, 지정구, 유천호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7명)

7. 기 타 사 항

○ 없음

붙임 : 1.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 각 목외의 부분 중 “각목”을 “각 목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”를 “태풍정보 또는 호우·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우려가 있는 단계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본부장”을 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사태 진압”을 “사태수습”으로 한다.

“다만,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”

제5조제1항 중 “위원은 다음과 같다”를 “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 행정부시장

제17조제10호 중 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”를 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”을 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과장”을 “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담당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”를 “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대한적십자사 시지사”를 “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부장”을 “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법 제39조의 제1항”을 “법 제3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제4호·제2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·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·제3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”를 각각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제5호·제5조제2항·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6호·제30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</u>」(이하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및 <u>같은법시행령</u>(이하“<u>영</u>”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<u>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·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</u> 및 <u>인천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</u>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<u>자연재난</u>”이라 함은 <u>별 제3조 제1호가목</u>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 2. “<u>인적재난</u>”이라 함은 <u>법 제3조 제1호나목</u> 및 <u>영 제2조</u>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. 3. “<u>자연재난대책기간</u>”이란 자연재난 중 <u>영 제13조 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<u>각호</u>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 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</u>」 및 <u>같은 법 시행령</u>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----- 2. -----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<u>영</u>”이라 한다)----- 3. ----- <u>각 호</u>-----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각 호</u>-----</p> <p>----- <u>다만,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<u>본부장</u>”이라 한다)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4. “인적재난대책기간”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</p> <p>5. “준비단계”라 함은 자연·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<u>각목</u>의 단계를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사전대비체제 :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<u>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</u></p> <p>다. <u>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</u>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</p> <p>6.~10. (생략)</p> <p>11. “대응단계”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<u>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(인원·장비·물자)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</u></p>	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5. ----- -----<u>각 목</u>----- -----</p> <p>가. <현행과 같음></p> <p>나. ----- ----- <u>태풍정보 또는 호우·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우려가 있는 단계</u></p> <p>다. <u>본부장</u>----- ----- -----</p> <p>6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 -----<u>사태수습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12.~14. (생략)</p> <p>제4조 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<u>당해</u>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</p> <p>6. <u>기타</u>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</p> <p>제5조 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위원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인천광역시장(위원장) 및 행정부시장(제9조의 실무위원회 위원장)</u></p> <p>2.~8. (생략)</p> <p>②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<u>당해</u>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 (실무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<u>당해</u>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p>	<p>12.~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(기능) ----- 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해당</u>----- -----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5조 (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</u> <u>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되고,</u>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u></p> <p>1. <u>시 행정부시장</u></p> <p>2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 <p>제9조 (실무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7조 (설치 및 기능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,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법 제14조의 <u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</u></p> <p>제19조 (구성 등) ① 대책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부장과 차장·총괄조정관·통제관·담당관을 둔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은 <u>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</u>이 되며,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.</p> <p>4.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<u>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과장</u>이 되며,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.</p> <p>5.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<u>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담당</u>이 되며,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 (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<u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</u>-----</p> <p>제19조 (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기획관리실장</u>----- -----</p> <p>4. ----- <u>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</u>----- -----</p> <p>5. ----- ----- ----- <u>과장</u>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 (재난대비체제)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·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, 기반재난의 경우 <u>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</u>의 규정에 의한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21조 (재난대비체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3조 (협조체제 구축 등) ① 본부장은 자연·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, 재난관리책임기관, <u>대한적십자사</u> 시지사·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⑤ <u>부장</u>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9조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되는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.</p> <p>⑥~⑦ (생략)</p>	<p>제23조 (협조체제 구축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대한적십자사</u> <u>인천광역시지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본부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⑥~⑦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 (인력·물자 및 장비 등 동원 체제 구축) ① 본부장은 <u>법 제39조의 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인력·물자·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4조 (인력·물자 및 장비 등 동원 체제 구축) ① ----- 법 제39조 제1항-----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 (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·임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<u>각호</u>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	<p>제26조 (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·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 (기능)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등</p>	<p>제30조 (기능) ----- ----- -----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31조 (구성)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, 위원은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1조 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2조 (임기 등)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제32조 (임기 등) ----- ----- --- <u>각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5조 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·도면 및 <u>기타</u>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5조 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